

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8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2년 6월 21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상수도사업본부 부분부장 고동욱)

- 가. 제안이유
 - 영문을 한글표기로 하고 특정 국가 명을 외국의 사례로 하는 한편, 감시 항목의 분류체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.
- 나. 주요골자
 - 한글 표기 및 특정 국가 명 삭제(안 제36조)
 - WHO 관련규정 ⇒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
 -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 ⇒ 외국의 사례

- 감시항목 분류체계 용어 통일(안 제39조)
 - 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부산물, 농약류 분야 ⇒ 수질검사 분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 영 배)

가. 안 제36조제2항

- 감시항목의 선정기준, 수질기준, 검사방법,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에 대해 특정 국가명을 삭제하고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은,
- 무분별한 영어 표기(WHO¹⁾)을 지양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한글 표기로 한다는 점과 현재 국내 정수처리 기술이나 수질검사 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주적인 표현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나. 안 제39조제1항제1호

- 세계보건기구 「먹는 물 수질 가이드라인」의 수질검사 항목이 기존 155개에서 163개로 확대됨에 따라, 서울시 감시항목에도 8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환경부 「먹는 물 수질기준²⁾」과 같은 분류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³⁾」의 개정에 앞서,

1) World Health Organization(WHO); 세계보건기구

2) 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, 심미적 물질로 분류

3)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, 검사주기 및 대상(별표 7), 검사방법(별표 8), 수질검사 수수료(별표 9)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」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음

[서울특별시 감시항목]

현 행(97개 항목)	개 정(105개 항목)
▫ 미생물 : 10개 항목	▫ 미생물 : 10개 항목
▫ 무기물 : 15개 항목	▫ 무기물 : 11개 항목
▫ 유기물 : 22개 항목	▫ 유기물 : 56개 항목
▫ 소독부산물 : 18개 항목	▫ 소독부산물 : 19개 항목
▫ 농약류 : 32개 항목	▫ 심미적 물질 : 9개 항목

⇒

- 감시항목에 8개 항목을 추가함
- 현행 농약류로 분류된 항목을 유기물 항목에 포함함
- 현행 무기물 항목 중 일부와 추가되는 항목 중 일부를 심미적 물질로 분류함.

-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9조제1항제1호에 감시항목의 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35조제3항과 같은 형식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“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부산물, 농약류 분야”를 그 상위 개념인 “수질검사 분야”로 통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제35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)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질검사 :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기준. 다만,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따른 기준
2. 수처리제 검사 :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
3.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: 「수도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

제39조(수수료)

① (생략)

1. 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부산물, 농약류 분야 : 4,000원 이상 30,000원 이하
2. 수처리제 검사 분야 : 500원 이상 55,000원 이하
3.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: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2. 4. 27 ~ 5. 16) : 해당없음

3) 규제심사 대상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부패영향평가결과 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WHO 관련규정 및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 외국의 사례”를 “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1호 중 “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부산물, 농약류 분야”를 “수질검사 분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감시항목의 선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, 수질기준, 검사방법,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<u>WHO 관련규정 및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</u>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9조(수수료)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,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미생물, 무기물, 유기물, 소독부산물, 농약류 분야</u> : 4,000원 이상 30,000원 이하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6조(감시항목의 선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</u>-----</p> <p>제39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수질검사 분야</u> : 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